

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·운영 조례 [2018. 12. 31] 조례 제3563호

일부개정 2020. 3. 9 조례 제3641호
일부개정 2021. 9. 16 조례 제3747호
일부개정 2024. 3. 28 조례 제3946호
일부개정 2024. 12. 31 조례 제4028호
일부개정 2025. 5. 13 조례 제4048호
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
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의 명칭은 연천 세계캠핑체험존(이하 “캠핑존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사로 123 일원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9>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3. 9, 2021. 9. 16, 2024. 12. 31>

1. “시설이용료”란 캠핑존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2. “시설”이란 캠핑존 내에 있는 펜션동, 관리동, 지원시설동, 풍차동, 물놀이장, 별빛테크야영장, 공원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.
3. “관리자”란 시설을 직접 관리·운영하는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또는 군수에게 위탁 또는 임대 받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종사자”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, 시설물관리,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(수탁받는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5. 삭제 <2024. 12. 31>
6. “성수기”는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, “비수기”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 다만, 군수가 캠핑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에는 성수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정할 수 있으며,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 9. 16>

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등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.

⑤ 수탁자는 캠핑존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9>

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된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20. 3. 9>

③ 삭제 <2021. 9. 16>

제6조(행위의 금지)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9. 16>

1. 수탁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
2. 수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
3.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제7조(위탁계약의 해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
2.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3.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

제8조(반환)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축조할 수 있다.

〈개정 2021. 9. 16〉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지도·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시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설이용료) ① 캠핑존을 이용하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1. 9. 16〉

② 군수는 캠핑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9. 16〉

③ 시설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1. 9. 16〉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. 9. 16]

제11조(예약) ① 군수는 시설 이용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9. 16〉

② 신청인은 예약신청일의 다음 날 자정 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다. 〈신설 2021. 9. 16〉

③ 삭제 〈2024. 12. 31〉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. 9. 16]

제11조의2(우선예약) ① 연천군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보장을 위하여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

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 12. 31]

제12조(시설이용료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9, 2021. 9. 16, 2024. 3. 28, 2024. 12. 31>

1. 면제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나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- 다. 삭제 <2024. 3. 28>

2. 100분의 20 경감

-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
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- 마. 「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무청에 등록된 병역명문가
- 바.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(증 소지자에 한함)
- 사.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
- 아. 교육지원청 교육장, 학교장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·중·고 등학생의 수련활동
- 자. 다자녀(자녀 2명이 모두 19세 미만으로 구성) 가정의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
- 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3. 28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28>

④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되며,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. <개정 2024. 3. 28>

[제목개정 2021. 9. 16]

제13조 삭제 <2021. 9. 16>

제14조(시설이용료 납부)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.

1. 현장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: 현장에서 즉시 결제
2. 전산망에서 이용권을 예약 구매하는 경우: 전산망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제

[전문개정 2021. 9. 16]

제15조(시설이용료의 환급 등) 시설이용료의 환급·배상 등의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4. 12. 31]

제16조(시설의 사용제한)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16>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
2.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17조(정기점검일 및 휴장일)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매월 정기점검일 및 명절(설·추석)의 전날, 당일, 다음날은 휴장한다. <개정 2020. 3. 9>

제18조(예비객실 운영) 관리자는 숙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 객실

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)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제2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캠핑존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1조(변상책임) ① 캠핑존 시설을 사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사용기간(시간)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,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1. 9. 16>

제22조(청문) 군수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3조(보험가입) 관리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4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 5. 13>

제25조 삭제 <2024. 12. 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9 조례 제364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9. 16 조례 제3747호>

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3. 28 조례 제39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2. 31 조례 제402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선예약과 시설이용료에 대한 적용례)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5. 5. 13 조례 제4048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
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〈개정 2024. 12. 31〉

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시설이용료(제10조 관련)

(1일 기준)

(단위 :원)

시설별	사용 기준	비 수 기		성수기 (7~8월)	비고
		평 일	주 말 공휴일		
펜션동	4인	120,000	140,000	160,000	전기, 수도 이용료 포함
	6인	160,000	180,000	200,000	
	8인	180,000	200,000	220,000	
별빛테크 야영장	1면	25,000	35,000	비수기와 동일	

※ 1일 사용시간:

-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징수
- 펜션동: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,000원, 2시간 이후 1일 이용료 추가
- 별빛테크야영장: 시간 초과 시 1일 요금 징수

※ 입장 제한: 고객의 불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
※ “주말” 및 “공휴일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.

가. 주말: 금요일, 토요일

나. 공휴일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그 전일

【별표 2】

세계캠핑체험존 사용자 수칙(제17조제2항 관련)

이 곳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입 장

- 캠핑존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장 시 전매 예방 및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.

2. 시설이용료

- 시설이용료는 공표된 요금으로 징수하며, 요금은 선불입니다.

3. 장 소

-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흡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자동차, 자전거 및 오토바이

-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:00부터 다음날 07: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존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잔디밭에 차량 및 자전거 진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존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- 오토바이는 100cc 미만은 출입할 수 있으나, 30킬로미터 미만으로 서행하여야 합니다.

5. 소 음

- 고성방가 및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다음날 07:00까지입니다.

6. 위 생

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합니다.
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.

7. 동 물

- 애완동물의 숙박시설 출입을 금지하며, 출입 시 강제퇴실 조치됩니다.
(다만,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.)

8. 화재와 사고

-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- 캠프장 내 불꽃놀이 및 풍등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9. 홍 보

- 캠프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
10. 유실 또는 피해
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(다만,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합니다)
-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비용이 청구됩니다.

11. 긴급사태
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표 3】 삭제 <2024. 12. 31>